

- ☐ 2004. 5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6 쪽

자연보전국
자연정책과

박희정 과 장
박연재 서기관

전 화
(메일)

2110-6731,39
p529446@me.go.kr

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

- ◇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핵심 산줄기와 생태축 보전
- ◇ 2005년 1월 법 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 지정

- ☐ 환경부와 산림청은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한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,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“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”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- 동 지정 원칙과 기준은 지난해 말에 제정된 「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전문가회의, 시민단체회의,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청회 및 환경부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.

※ 법률 제6조 :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·고시

- ☐ 지정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,

- 백두대간의 능선(마루금)을 중심으로 산줄기와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전하며, 산림식생의 다양성은 물론 희귀 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·유지되도록 하고,

-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수계, 산지체계,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**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고,**
- 이미 형성된 자연마을과 도시화된 지역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**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**하고,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- **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**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계류유역의 외곽지역 중 물리적 여건(표고, 경사, 능선으로부터 거리), 생물적 여건(생태자연도, 임상, 영급), 관리적 여건(법정보호구역)을 고려하여 설정하되,
 - **핵심구역**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1차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, 생물적 여건, 관리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고,
 - **완충구역**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있다.
- ※ 1차, 3차 계류유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하며, 계류유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와 다른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(계류점)을 연결하여 합하는 유역을 의미한다.

- **앞으로 산림청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**이다.
- 동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 전문가, 지자체 등의 참여하에 **현장조사 및 지적 확인** 과정을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상범위(안)을 설정하고,
 -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(6개도 32개 시·군) 및 지역주민 등 **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**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법률시행과 병행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**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** 심의를 거쳐 **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정**할 계획이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

〈붙임〉

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

1. 지정 원칙

- 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.
 -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능선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(watershed)을 포함한다.
 -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.
- ②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, 생태축으로서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산림식생의 다양성,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·유지되어야 한다.
- ③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, 산지체계,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.
 - 수계와 물리적 여건(표고, 경사 등), 생물적 여건(생태자연도, 임상 등), 관리적 여건(법정보호구역 등)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.
- ④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전(보호)지역 중 취락지구 등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⑤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,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2. 지정 기준

□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

-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의 외곽지역중 물리적 여건, 생물적 여건,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.
- 보호구역의 경계는 소능선을 우선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한다.
- ※ 1차, 3차 계류유역은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한다.

□ 핵심구역

-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(표고, 경사, 능선으로부터의 거리), 생물적 여건(생태자연도, 임상, 영급), 관리적 여건(법정보호구역)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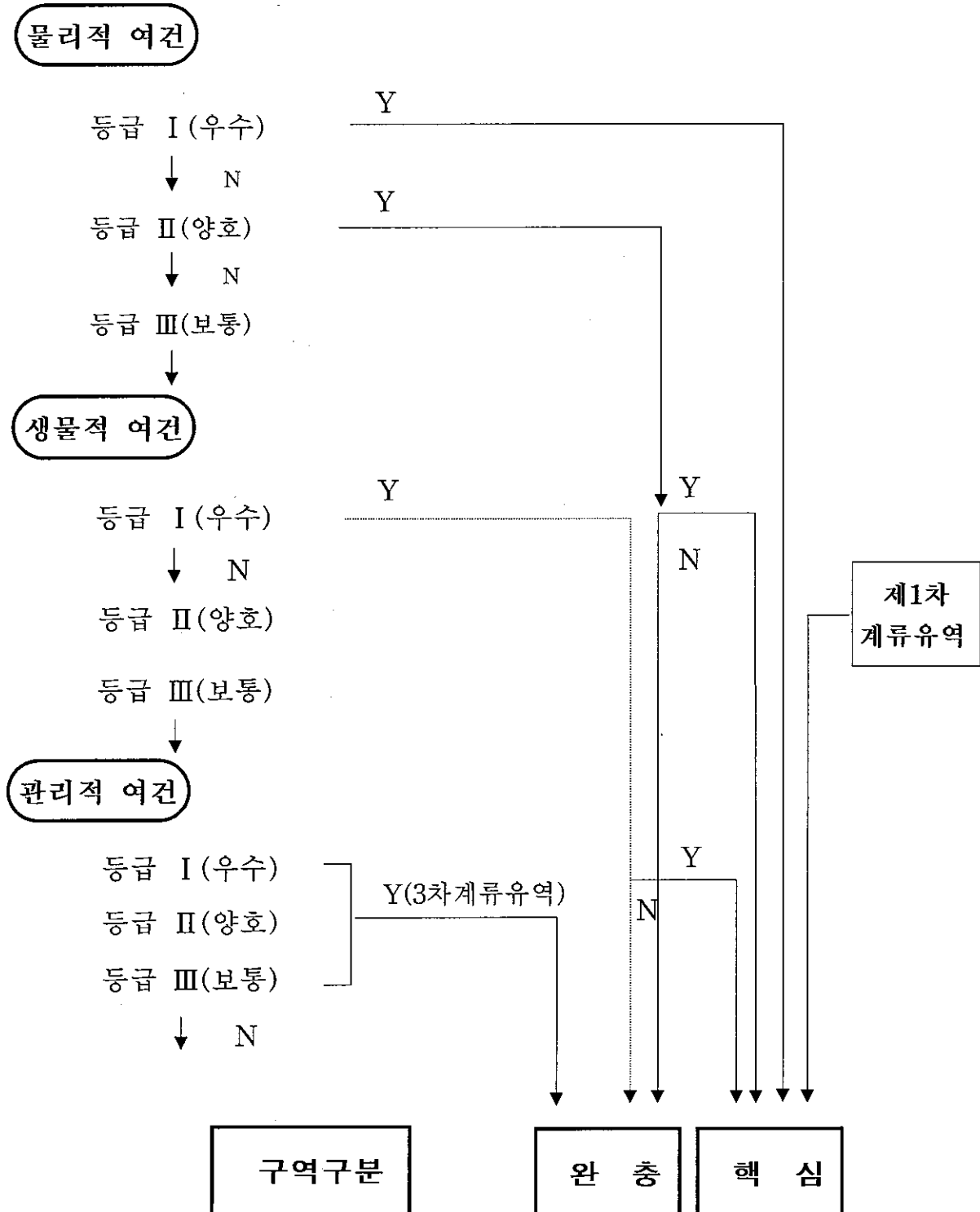
□ 완충구역

-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.

- ※ 첨부 : 1. 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
2.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

〈첨부 1〉

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



〈첨부 2〉

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

□ 물리적 여건 : 표고, 경사, 능선으로부터 거리

-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~4점은 우수, 5~7점은 양호, 8~9점은 보통
 〈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〉

점 수	표 고	경 사	능선으로부터 거리
1점	800m 이상	30°이상	300m 이내
2점	800 ~ 500	30 ~ 15	300 ~ 700
3점	500m 이하	15°이하	700m 이상

□ 생물적 여건 : 생태자연도, 산림의 임상, 영급

-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~4점은 우수, 5~7점은 양호, 8~9점은 보통
 〈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〉

점 수	생태자연도	임 상	영 급
1점	1등급	자연림	5, 6 영급
2점	2등급	인공림	3, 4 영급
3점	3등급 및 기타	무입목지 및 기타	1, 2 영급 및 기타

□ 관리적 여건 : 지정된 법정보호구역의 성격에 따라 등급화

〈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〉

구 분	법정보호구역
우 수	자연공원(자연보존지구, 자연환경지구), 산지전용제한지역, 산림유전자원보호림, 보안림, 문화재보호구역, 개발제한구역, 보전녹지구역, 상수원보호구역, 조수보호구역, 생태계보전지역, 요존 국유림
양 호	시험림, 채종림, 기타 공익용산지
보 통	임업진흥권역, 준보전산지, 기타 임업용산지, 산업용지